

## 사무국에서 알려드리는 말씀

### 1. 1998년도 정기총회 개최

가. 개최 일시 : 1998년 2월 6일(금) 11:00~13:00

나. 개최 장소 :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회의실(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, TEL: (02)646-3046)

다. 참가 대상 : 전 회원사 대표자

라. 부의 안건

- ① 199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승인건
- ②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건
- ③ 정관 개정의 건
- ④ 협회 감사 선임건

⑤ 기타 토의사항(폐기자산 검토 폐기등)

마. 참가비 : 없음.

바. 금번 총회는 IMF 체제하에서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대처방안등을 심도있게 토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로 참석할 경우에는 협회 정관 제2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. 문의처 : 협회 사무국

TEL : (02) 646-3046/휴대전화 : 011-733-6159

아. 담당자 : 사무국장 배 성준

## 문현정보 <입수자료 목록>

### 1. 독일

가. MAN(열병합발전설비 제작업체)

- o Cogeneration Plants and Generator Sets with Gas-engine
- o Integration of 25MW Gas-turbine into existing power station
- o Erste FT8 twinpac Gas-turbine and Steam-turbines
- o Industrial Gas-turbines and Steam-turbines
- o THM Industrial Gas-turbines
- o GHH BORSIG Experienced list of Korea
- o Gas-engine and Gas-turbine Modules for the Cogeneration
- o Cogeneration Cost-efficient energy production
- o Cogeneration Modules and Gensets

o Convincing Technology

나. VGB(독일열병합발전협회)

- o Information for VGB Members
- o VGB Kraftwerks-technik
- o Simulator Training for fossil-fired Power Plants
- o Mitte Cogeneration Plant
- o Brief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VGB

### 2. 네델란드

가. PWK(네델란드 열병합발전협회)

- o Energy saving-more important than ever
- o European Cogeneration Review 1997
- o The Netherlands Cogeneration Catalogue
- o Cogen Europe 1996

- o Cogeneration electricity production at its best
- 나. NOVEM(네델란드 에너지 환경청)
  - o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Environment
  - o Building on Energy Policy(1994-1998 Built Environment Program)
  - o Renewable energy in the Netherlands

### 3. 프랑스

- 가. EDF(프랑스 전력공사)
  - o Technical Operation Results 1996
  - o Organization and keys figures
  - o Electricite de France General Presentation
  - o Cogeneration Development
  - o Cogetherm General overview
  - o Blue, Yellow, Green, Electricity Tariff

## 참고자료 1. 규제완화 및 관련법규 개정내용

### 1.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유량 규제 완화

#### ○ 개요

우리 협회에서 1996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열병합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의 완화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1997년 12월 31일부로 공포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황함유량 0.3%이상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지불하던 기본부과금을 황함유량 0.5%미만의 액체연료와 0.45%미만의 고체연료를 사용시 면제받게 되어 기존열병합발전업체에는 연료비용이 경감되고 신규도입업체에 대해서는 투자경제성이 다소 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.

○ 관련 근거 : 대통령 제 15,583호(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중 개정령)  
1997년 12월 31일 관보에 게재

#### ○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 (안)
제26조(부과금의 부과면제) 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 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 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	제26조(부과금의 부과면제)  좌 동

현 행	개 정 (안)	
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호에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1.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.3퍼센트 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, 발전 시설외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.5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 또는 황함유량 0.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2 ~ 3 <생략>	1.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.3퍼센트 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, 발전 시설외의 배출시설(설비용량 100MW미만의 발전시설을 포함한다.)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.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.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
#### ○ 기타

관련업체는 이 내용을 숙지하여 기준내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기본부과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출부과금은 이와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.